

-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 -

제 안 설명서

설명자: 이영빈 대표의원

**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
드리겠습니다.**

-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.
- 본 연구단체는 2023년 3월 17일 등록 승인을 받았으며, 연구단체의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최홍린 의원, 박종길 의원, 남현주 의원으로 총 4명입니다.
-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,
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전체적으로는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의 확대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였으나, 시·군·구의 위법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 시·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·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·감독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.
- 이에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관계조례에 내재된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입법미비 사항을 발굴·검토하고, 위탁 관계 조례의 합리적 제도개선과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, 지방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법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.

□ 다음은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지난 4월 26일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의 제1차 간담회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,
- 연구 성과 공유, 향후 연구수행 방향 점검 및 논의를 위한 중간보고회 및 제2차 간담회 개최,
- 사무 위탁·대행·용역 등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·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고자, ‘녹색자원’ 현장견학 실시,
- 현행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체계성·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고,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행부와 현실적인 조례 제·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,
- 최종 연구결과 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,
- 마지막으로 8월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4개월간의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.

□ 본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첫째, 사무 위탁 통합 기본조례가 필요합니다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·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고, 같은 법 제16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사무를

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는 법인·단체, 개인 등 민간부문의 위탁에 따른 절차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에 대한 사무 위탁을 규율할 수 있는 조례는 부재한 실정입니다.

- 따라서 사무 위탁의 기본조례인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정의를 민간부문 외에 공공부문(공공기관·공공단체, 지방자치단체 포함)을 포함하는 통합 기본조례로 재정비하여, 사무의 위탁행정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둘째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공유재산법)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_고시)에 따르면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될 경우에는 「공유재산법령」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다수의 조례에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적용하여 법령과 불합치한 상황입니다.
- 사무의 위탁에 있어 행정재산이 혼용된 경우에는 특례 규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해당 위임조례인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

재산 관리 조례」를 개정 보완하거나 또는 가칭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본조례」를 별도로 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절차·방법 및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.

- 이외에도 민간위탁·공공위탁, 관리위탁 등 용어의 혼용으로 절차상 하자가 우려되므로 법정 위탁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며, 위탁과 대행, 용역 등 유사 사무의 혼용으로 개념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·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사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무 위탁 운영 매뉴얼 제작·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 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 검토된 사항들이 사무위탁 통합 조례와 공유재산 조례의 제·개정이 되길 바라며, 연구회 활동 결과를 입법 자료로 활용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여 법령 불합치 및 입법 미비 사항 조례들을 정비해 나가 달서구민들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. 아무쪼록 본 연구 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